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4년 1월부터 시행 -
- 전문성 강화를 통해 노인 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표준교육과정 (총 240시간) :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3년 8월 8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23.9.25.)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 * (면제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방식	·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시간 및 내용	· 2년마다 8시간 이상 ·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소속 요양보호사가 내실 있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붙임>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담당 부서 <총괄>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책임자	과 장 임동민 (044-202-3510)
		담당자	사무관 박창배 (044-202-3511)
			주무관 배선희 (044-202-3519)



□ 추진배경

-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도입

□ 사업개요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 * (면제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교육주기)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
-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 온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근무 중 요양보호사 돌봄 공백 최소화하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간 제한 (최대 4시간)
- (교육기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원 및 경력관리,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을 위해 관리기관과 실시기관을 구분
 - (관리기관) 건강보험공단
 - (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실적이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요양보호사 교육기관·단체·법인 등
 - * (온라인교육기관) 집합(대면) 교육기관 중 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기관·단체·법인 등
- (교육과정)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4가지 영역으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양보호사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8조의3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 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 2024년 1월 1일
별지 제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소 속:

4. 자 격 번 호:

위 사람은 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직인